

[사 건 명] 행심 2018 - 12

중학교 배정 관련 교원 등에 대한 처분 요청 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교육지원청 교육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없음.

[재결이유]

## I.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학교폭력 관련 학생의 학부모로서 2018. 02. 06.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또 다른 관련 학생 보호자의 각서를 받아 줄 것을 해당 초등학교에 요구하였으나, 해당 초등학교는 각서 제공 여부에 대해 관련 학생 보호자 간 합의할 사항임을 안내한 사실이 있으며,

나. 청구인은 학폭위가 열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나 해당 초등학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므로 2018. 02. 19. 학폭위를 개최하여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의 자녀는 중학교 배정 결과, 관련 학생(가해학생)과 같은 학급에 배정을 받았고 청구인은 이에 ◎◎교육지원청에 시

정을 요구하였고,

라. 청구인은 이 사건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을 직권남용과 업무태만을 이유로 하여 처벌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마. 청구인은 2018. 03. 02. 온라인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2018. 03. 05. 접수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에 청구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내용이 부적합하여 2018. 03. 05. ~ 03. 08.까지 보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 II. 청구인 적격

가.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나. 「행정심판법」 제13조 제3항에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청구인은 학교폭력 관련 학부모로서 ‘학교폭력 아님’ 결정에 대한 취소·변경 또는 ‘중학교 배정’의 취소·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 III. 피청구인 적격

가.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항에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 나. 이 사건 청구는 심판청구의 취지가 명확하지 않아 처분을 한 행정청 또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판단할 수 없다.

#### IV. 청구 대상

- 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행정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라 명시되어 있다.

- 나. 「행정절차법」 제2조에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行政作用)”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 다. 청구인 자녀의 중학교 배정 과정에서의 시정요구와 담당교사 및 업무담당자에 대한 처벌 요구는 민원사항으로 보이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사항을 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그 민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이로써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청구 취지가 ‘학교폭력 아님’ 결정에 대한 불복이라면 피해학생의 재심청구 방법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청구를 하였거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므로, 청구인의 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보기 어렵다.

## V. 청구 방식

가. 「행정심판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는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행정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하도록 심판청구의 방식을 명시하고 있는 바,

나. 이 사건 청구인은 필요적 사항인 심판청구의 취지를 기재하지 않았다.

## V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일정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학부모로써 학교측에 가해학생 학부모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각서를 써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학교는 이를 거부하였다.

나. 학교측에서는 피해학생측의 동의 없이 학폭위를 개최하였고, 학폭위에 참여한 학부모 위원들이 위원으로써의 자격이 안된다는 사실을 ○○교육지원청에 알렸으나 행정처분은 하지 않고 학폭위 재심청구나 하라는 답변만 받았다.

다. 중학교 배정 과정에서 피해학생인 청구인의 자녀와 가해학생이 다른 반으로 배정될 것이라고 했음에도 같은 반으로 배정하는 보복성 배정을 하였다.

라. 학교를 지도관리해야 할 ○○교육지원청은 구경만 하였고 해당 학교장과 담임교사는 직권을 남용하였다.

마. 관련된 교원 ■■초등학교 교장, ○○교육지원청 ㉠㉡ 장학사, 6-○반 담임교사 ■■■를 엄중 처벌해주어야 한다.

## VII. 피청구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심판의 청구취지를 특정하고 있지 않아 피청구인으로서의 청구인의 청구취지가 청구인에 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것인지, 피청구인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나.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일정한 처분을 신청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조리상 권리가 인정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다. 청구인은 학교폭력 관련 학생의 학부모로서 청구인의 자녀가 중학교에 진학함에 있어 학교 배정과 관련하여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관련 공무원들에게 조치를 취해줄 것을 청구하는 것은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라. 청구인의 청구취지가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단순히 행정청의 직권 발동을 요구하는 신청은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 VIII. 청구인의 보충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충하여 주장한다.

- 가. 청구인의 자녀는 학교폭력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음에도 학폭 위에서는 ‘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하였다.
- 나. 학교장과 담임교사의 무책임한 행위로 피해학생인 청구인의 자녀와 가해학생이 같은 학교에 배정되어 청구인의 자녀는 10일 넘게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다른 학교로 옮겼으며 교복도 두 번 맞추었다.

## IX. 피청구인의 보충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녀와 관련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학교폭력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교에서 ‘학교폭력 아님’결정한 것은 부당하고 조사과정에서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학교폭력사안 아님’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관련 법령에 따라 관련 기관에 재심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 나. 학교폭력사안과 중학교 배정 처리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처분을 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처분을 요청하게 된 경위와 관련 사실 및 법적 근거를 제시해주어야 피청구인으로서는 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다.

## X. 이 사건 청구의 적법 여부

- 가. 먼저, 이 사건 청구인은 학교폭력 관련 학부모로서 ‘학교폭력 아님’ 결정에 대한 취소·변경 또는 ‘중학교 배정’의 취소·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청구는 심판청구의 취지가 명확하지 않아 처분을 한 행정청 또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판단할 수 없어 피청구인 적격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 다. 또한, 청구의 대상에 있어서도, 청구인 자녀의 중학교 배정 과정에서의 시정요구와 담당교사 및 업무담당자에 대한 처벌 요구는 민원사항으로 보이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사항을 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그 민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이로써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청구 취지가 ‘학교폭력 아님’ 결정에 대한 불복이라면 피해 학생의 재심청구 방법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청구를 하였거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므로, 청구 대상에서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 라.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 XI.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청구의 위법 여부를 살피기 이전에 청구 제기가 부적법하므로, 이에 이 사건 청구를 각하 하기로 한다.